

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제 1 절 계약기간

제55조 (계약기간) 대표자(또는 시설장)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-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② 등급 변경, 계약기간 종료,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
- ③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제 2 절 계약목적

제56조 (계약목적)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 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 3 절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

제57조 (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) 월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」에 따른다.

-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)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.
-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, 이·미용료,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.

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

제58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)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는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-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 - 1.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 - 2. 입소자에 대한 요양, 간호,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 - 3.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 - 4. 입소자의 처우개선, 불편사항,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
1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.
2.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.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.
4.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.
5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6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.

제 5 절 계약의 해제

제59조 (계약의 해제)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(또는 시설장)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(보호자)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1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2.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1.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2.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 3.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4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5.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6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7.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8. 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
 9.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
 10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.
- ③ 수급자(보호자)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‘시설’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제60조 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) 대표자(또는 시설장)는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-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④ 기타 맞춤형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

제61조 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) 대표자(또는 시설장)은 월별 비용 수납액 및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)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 재계약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제62조 (서비스의 내용)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.

구분	세부내용
건강 및 간호관리	
관찰 및 측정	혈압, 체온, 맥박, 호흡 측정, 신장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 등 측정
건강관리	투약관리(먹는약 투여 및 도움·확인, 바르는 약 도포 및 좌약 삽입,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), 기초건강관리(관찰 및 기초건강사정, 감염간호, 치매돌봄 정보제공, 교육 및 상담, 의료기관 의뢰 등), 인지훈련(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) 등
간호관리	욕창관리(욕창예방, 욕창간호 등), 영양관리[튜브영양공급, 비위관(L-tube) 교환 등], 통증관리, 배설관리[소변배출관(도뇨관) 관리, 방광간호, 회음부 간호] , 배설간호 당뇨발관리(당뇨발 간호, 상처관리 등), 호흡기관리(흡인 간호, 기관절개관 관리, 산소요법 관리 등), 구강관리(구강감염 예방 등)
응급서비스	의식소실, 호흡곤란, 출혈, 외상,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
시설환경관리	
침구·린넨 정리	침구 준비와 정리, 침구·린넨 교환
환경관리	침대주변 정리정돈, 병실 내 환기, 온도조절, 채광, 방음조정, 전등과 TV 켜고 끄기, 병실 내 청소, 병실·세면대 소독, 병실 쓰레기 버리기
물품관리	의복, 일용품 정리정돈, 의복수선, 환자보조기구의 관리, 입소자의 용돈관리
세탁물관리	세탁물 정리정돈, 세탁물 빨기, 널기, 개키기, 배포, 사용물품의 소독
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	
인지 관리지원	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,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,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,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
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, 격려	책읽기, 편지 대필, 의사전달 대행, 일상회화, 물품(편지, 신문 등 배포),응급벨 대처, 의사소통 도움, 말벗 및 격려·위로, 정서적 지원,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,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, 대화·편지·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

제63조 (서비스의 비용)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장기요양급여비용 공

단부담금은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장기
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다.